

##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규정

2024년 4월 3일 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회의 필요에 의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고문의 자격 및 위촉) 학회의 역대 회장을 비상근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.

제3조 (자문위원 자격 및 위촉) 학회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,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4조 (직무)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의 자문 요청에 응하거나 필요시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5조 (임기) 고문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,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부칙.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